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

제6장 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

제55조(비용의 산정기준 원칙) ① 안전점검등 비용(이하 “대가”라 한다)은 제3장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과업의 직접인건비, 제경비, 기술료, 직접경비와 선택과업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.

② 대가는 정액적산방식(안전점검등의 실시에 소요되는 기준 인원수를 기초로 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)에 따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선택과업비용은 기본과업 외에 관리주체가 안전점검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거나 책임기술자가 사전조사 후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해 추가한 과업의 비용으로 제60조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.

제56조(직접인건비)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점검 및 진단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인원 등의 급료, 제수당, 상여금, 퇴직적립금,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별표 21의 기준시설물에 대한 별표 22의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 대하여 별표 23의 시설물별 조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다.

②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·공표한 건설부분의 노임단가기준을 따른다.

③ 관리주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 등의 작업이 불가피한

구분	규격		정밀안전진단		정밀안전점검		정기안전점검	
			전체	외업	전체	외업	전체	외업
수도	취수·가압펌프장	1만 m ³ /일	46	12	13	8	5	3
		5만 m ³ /일	51	15	13	8	5	3
		10만 m ³ /일	56	18	15	9	6	4
		20만 m ³ /일	66	24	17	11	6	4
		50만 m ³ /일	97	43	23	15	9	5
	배수지	2,000m ³	46	12	12	8	5	3
		5,000m ³	51	15	12	8	5	3
		10,000m ³	58	19	14	10	6	4
		30,000m ³	85	35	18	13	8	5
		50,000m ³	113	51	24	18	10	6
공공하수 처리시설		1만 m ³ /일	79	26	16	10	6	4
		5만 m ³ /일	88	32	19	12	7	4
		10만 m ³ /일	99	39	20	13	8	5
		20만 m ³ /일	121	53	24	16	9	6
		40만 m ³ /일	166	82	32	23	11	7
옹벽	콘크리트옹벽, 높이 10m, 길이 200m, 부지옹벽		64	18	15	11	6	4
절토 사면	면도2차로 이상의 국도, 지방도, 국지도 부속 암사 면, 높이 50m, 길이 200 m		92	31	23	13	8	5
공동구	2.0×2.0×2연	100 m	71	13	11	6	5	3
		300 m	83	18	13	7	5	3
		500 m	94	23	14	8	6	4
		1,000 m	124	37	19	11	7	4
		2,000 m	183	64	29	18	9	5
		4,000 m	301	118	47	30	13	7

※ 기준시설물의 규모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보간법(내삽 및 외삽)을 이용하여 산출한다.

※ 항만의 원유부식계류시설 및 갑문의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에는 기계·전기설비의 성능검사품
이 포함되어 있음